중소벤처기업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지 면) 12. 26.(화) 조간
(인터넷) 12. 25.(월) 12:00

〔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돋보기〕

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,000조 돌파

- 윤석열 정부 이후 연간 사용액 160조원 상회, '23.12월 누적 1,000조 달성
- 지역 중소기업과 유통업 소상공인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

중소벤처기업부(이영 장관)는 지난 14일에 **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,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**했다.

상생결제는 **최상위 구매기업**(대기업, 지자체 등)의 **거래대금**을 하위 **협력사까지 직접 지급**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, **하위협력사**들은 **대금 지급일**(납품후 60일 이내)에 **현금**을 받거나 자금이 **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**으로 할인받아 **미리 현금화**할 수 있다.

윤석열 정부는 **'상생결제 활성화'**를 **국정과제**에 **포함**시켜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, 상생결제 **연간 사용액**은 작년부터 **160조원**을 **상회**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.

* 연도별(조원) : ('15) 24.6 → ('16) 66.7 → ('17) 93.6 → ('18) 107.4 → ('19)115.6 → ('20) 119.8 → ('21) 142.8 → **('22) 166.3 → ('23.12) 163.4**

특히,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**지자체 합동평가**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**모든 광역지자체**가 상생결제를 **신규도입**하고 **지역 중소기업**까지 **납품대금**을 **상생결제**로 **지급**하고 있다.

* 17개 광역지자체 102건, 총 34.4억원을 상생결제로 지급('23.11월말)

또한,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, 에스케이(SK)스토아, 이랜드월드 등 **유통플랫폼**이 **도입**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**연간 1조 6천억원**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.

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“**상생결제가 확산됨에 따라**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**납품대금을 제때 받고,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**이 **조성**되고 있다”며, “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**유인책(인센티브) 제공** 등을 통해 **대기업**의 **하위협력사**와 **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**을 **확산**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상생협력정책관실 상생협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손후근 (044-204-7920)
		담당자	사무관	남현재 (044-204-79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상생결제 개요 및 운용현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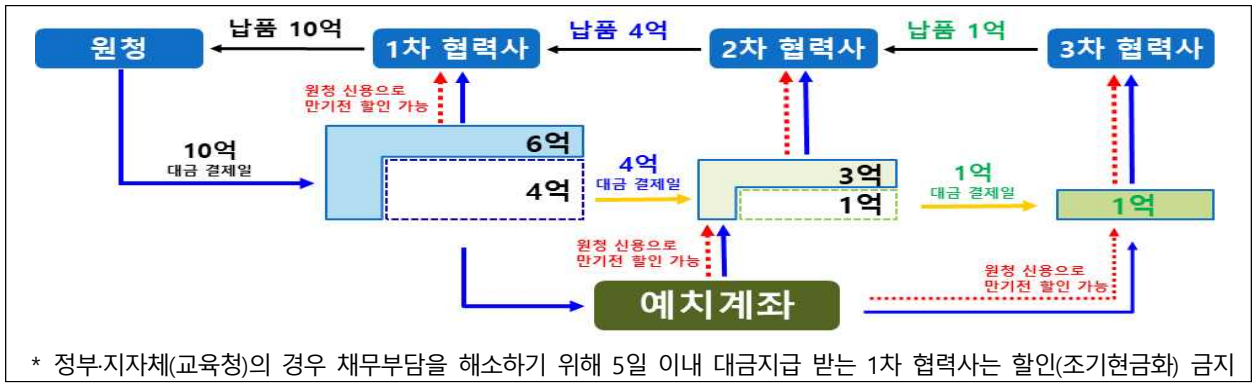
□ 개념 및 운용구조

○ **원청**(지자체, 대기업 등)이 각각의 **하위협력사**로 **직접 대금지급**하는 기능을 갖춰 **1차사 및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 대금 수취** 가능

- **대금지급일 전**에도 **원청의 신용**으로 저금리(4~6%) **조기현금화** 지원

○ 납품기업에 대한 **상환청구권이 없고**, 2·3차 협력기업도 **최상위 원청의 신용도로 할인**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**어음할인과 차이**

<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흐름도 >



* 정부·지자체(교육청)의 경우 채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(조기현금화) 금지

□ 운용 현황 : '15.4월 도입 후 '23.12월 14일 누적 총 1,000조 1,536억원*

* 연도별 총액(조원) : ('15) 24.6 → ('16) 66.7 → ('17)93.6 → ('18) 107.4 → ('19)115.6 → ('20) 119.8 → ('21) 142.8 → ('22) 166.2 → **('23.12.14) 163.4**

□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

○ **(세제)** 중소·중견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**소득세·법인세 감면***

* 만기일에 따라 ① 15일 이내 금액의 0.5%, ② 16~30일 0.3%, ③ 31~60일 0.15%

○ **(정책지원) 세무조사 유예, 정책자금** 한도 상향(60→100억), 기술**보증료 감면**(0.2%), **병역지정업체 지정**평가 가점(1점) 등

○ **(포상)** 중소벤처기업부 **장관 표창** 수여, 상생결제 우수기업 **현판** 전달